

식물병해충의 국내발생 보고가 식물검역에 미치는 영향

허 노 열*

국립식물검역소

The Effect of New Plant Pests Report on Plant Quarantine

Noh-Youl Heo*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Anyang 430-016, Korea

(Received on May 30, 2003)

식물검역이란 외래병해충의 침입·정착을 방지하고 일단 침입된 병해충을 박멸 또는 방제하거나 그 만연을 지연시켜서 자국 농림업의 안전과 증진을 꾀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남북으로 길고 대륙에 연결되어 있으며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기후도 다양해서 외국병해충의 침입 기회도 많거니와 일단 침입한 병해충들이 정착하면 농림업에 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감자역병균(*Phytophthora infestans*), 벼물바구미(*Lissorhoptrus oryzophilus*), 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 등은 잘 알려진 외래 병해충이다. 이러한 병해충의 침입을 미연에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과 수출입식물을 검사해서 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검역의 기본 임무이다.

한편 식물검역이 무역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 전제이다. 자유스러운 농림산물의 교역을 위해서 '94년에 우루과이라운드가 종결되고, 이어서 '95년 1월부터 발효된 WTO/SPS협정(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에 따라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사무국에서 제정한 식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회원국들이 자국 규정에 조화·일치시켜 따르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 '96년 12월 식물방역법을 위의 협약에 맞도록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골격은 검역규제를 국제기준 이상으로 강화하려면 투명성을 전제

로 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그 세부 내용은 검역병해충(Quarantine Pests)에 국한해서 소독·폐기·반송·수입금지 등의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미 국내에 정착한 일반 병해충 또는 비검역병해충(Non-Quarantine Pests)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2002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검역병해충은 금지병해충이 59종, 관리병해충이 1,813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해충 1,437종, 진균 310종, 세균 및 파이토플라즈마 56종,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56종, 잡초 13종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검역병해충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병해충 위험분석(PRA: Pest Risk Analysis)을 통해서 그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 식물병해충의 국내 발생 여부는 농림산물의 국제유통에 따른 식물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만약에 어떤 병해충이 국내에 발생하지 않으면 그 병해충의 기주가 되는 농림산물을 수입할 경우 수출국에 대하여 병해충목록 제출, 재배지 검사, 식물위생증명서에 당해 병해충 무발생 부기 등의 검역적 안전장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 발생하는 병해충인 경우에는 비검역병해충으로 간주되어 검역적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없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농림산물을 수출할 경우 특정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지만, 국내에 발생한다면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식물검역상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않고는 수출할 수 없다.

세계 각 국의 검역당국은 병해충 분포상황을 국제적인 병해충 연구·조사 기관인 CABI(Center for Agriculture and Biosciences International)에서 발간한 병해충 분포지도(Distribution Maps of Plant Diseases, Distribution Maps of Pests)를 통해서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병해충 분포지도는 각 국이 병해충 관련 학회를 통하여 발표하

*Corresponding author

Phone)+82-31-441-9882, Fax)+82-31-448-3489

E-mail)nyheo@npqs.go.kr

는 정보에 따라 발간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병해충 관련 학회지에 발표되는 논문 중에는 특정 병해충이 검출된 장소(즉, 시료의 출처)가 검역현장, 격리포장 또는 일반 농가의 포장인지 애매할 때가 있다. 만약에 검역현장 또는 격리재배중인 식물이었다면 그것은 국내식물이 아니다.

실제로 한국에 발생하지 않는 병해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발생한 것처럼 알려진 경우도 있었다. 특정 병해충의 국내 발생여부는 식물검역업무 수행의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검토사항이며 농림산물의 수출입에 있어서 검역상의 검역조치와 안전조치에 관련된 아주 긴요한 사항으로, 특히 새로운 병해충의 발생을 기재하는 보문에서 유의할 사항이다. 다음의 예는 특정 병해충의 발생 기록과 관련하여 외국과의 검역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두 가지 사례이다.

[사례 1] Tobacco rattle virus(TRV)

네덜란드에서 수입된 글라디올러스 구근을 국내에서 재배하던 중 TRV가 검출된 적이 있었으며, 이 사실이 기록된 학술지 영문 초록을 근거로 2000년판 CABI Compendium of Crop Protection의 병해충분포지도에 TRV 가 한국에 분포하는 것으로 기록되었음. 이에 따라 네덜란드산 화훼 구근류의 현지검역 및 뉴질랜드산 감자 수입요건을 협상할 때 우리측이 수출국에게 TRV의 관리방안을 요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는 SPS협정에 따라 TRV를 우리나라의 검역병에서 제

외시킬 것을 주장하였음.

최근 국립식물검역소는 CABI측에 “TRV는 수입구근에서 검출된 것으로서 국내에는 분포하지 않음”을 알려서 다음 판 분포지도에서 이를 시정하겠다는 회신을 접수하였음.

[사례 2] 코드린나방(*Cydia pomonella* L.)

Balachowsky(1966)의 보문(Entologie appliquee a Agriculture, Lepidoptera, 2 : 662-663)에 코드린나방이 한국에 분포한다는 오류가 있었던 바, 동 기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K. T. Park *et al.*(1976)의 보문(The Absence of Codling moth, *Cydia pomonella* L. in Korea. Korean J. Plant Prot. 15(2): 79-81)을 근거로 CABI는 '89년 6월 코드린나방의 한국 분포 기록을 병해충 분포지도 제9호에서 시정하였음.

그리고, 코드린나방이 한국에 분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측이 미국·캐나다·중국·호주·뉴질랜드산 사과의 수입을 금지하는 근거가 되고 있음.

식물검역 업무는 ‘제2의 국방’이며, 수출입식물 상대국과 병해충분포와 관련된 협의가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 병해충의 발견에 관한 논문을 발표할 때에는 병해충이 검출된 장소 또는 시료의 출처(국내산 또는 수입산)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식물검역과 관련된 협상에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식물병리학회 회원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